EU - 중국을 상대로 한 세이프 가드 발동에 대한 지침 발표

EU의 집행 기관인 EC(European Communities)는 현지 시간으로 2005년 4월 6일 중국에게 발동하려는 섬유 세이프 가드의 지침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. EC에 의하면 EU 가맹국 및 중국 모두에게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, 중국에 대한 섬유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는 요건이나 수속을 정하였다. 피해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EU 가맹국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유품 생산국의 상황까지 고려하기로 하였다. 미국에서는 이미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기 위하여 피해 조사를 시작하였으며, EU도 발동에 따른 체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.

2005년부터 쿼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, 중국으로부터 EU 여러 나라로 섬유품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. EU 여러 나라들은 섬유품 수입 중에서 중국품이 1/3을 차지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. 이와 같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인 EU 여러 나라의 섬유 산업에게 극심한 시장 경쟁을 무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, 섬유 생산품의 95%를 EU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지중해 연안의 모로코, 튀니지, 터키 등 여러 나라로부터의 수출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.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와 같은 발전 도상국으로부터 EU에의 수출도 어쩔 수 없이 시장으로부터 밀려나고 있다고 한다.

이들에 대하여 EC는 2001년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(WTO)에 가맹할 때 약속한 섬유 특정 세이프 가드 조항(TSSC)에 따라 대항 조치하려고 준비 중이다. 이 지침을 발표하면서 EC는 세이프 가드를 자동적으로 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태가 생겼을 때에는 효과적이며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

있다고 하고 있다.

◎ EC의 대중국 세이프 가드 발동 지침(요약)

EC의 중국에 대한 세이프 가드 발동의 요건 및 수속 절차에 대한 지침은 대략 다음과 같다.

① EU 가맹국의 세관 당국의 수입 데이터를 EC가 집약하여, 과거 1년간의 평균 단가나 수입 패턴 등을 비교하여 평가의 기준으로 한다.

② 수입량의 급증이나 단가의 급락에 대하여 일찍이 경고할 수 있도록 경계 영역을 설정한다.

③ 경계 영역을 넘은 경우에는 시장 교란의 조사를 EC가 착수한다. 조사와 병행하여 중국에 비공식 협의를 제의한다.

④ 조사 및 비공식 협의 기간은 21일 이내의 관계자 의견 청취를 포함하여, 60일간이다. EC는 EU 가맹국의 피해뿐만 아니라 EU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의 섬유품 수출에 미친 피해도 고려한다.

⑤ 조사 기간이 끝나면 TSSC 조건에 따라 중국과의 정식 협의 요구 여부를 EC는 섬유 위원회의 멤버 여러 나라와 협의 한다.

⑥ 정식 협의가 요청된 경우 중국은 15일 이내에 기준년(조사 개시 시점의 14개월 전부터 따진 12개월 간)의 7.5% 증(모 관계는 6% 증)까지 수출량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대한다.

⑦ 중국이 수출 억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, EC는 세이프 가드를 즉시 발동하여 앞에서 언급한 신장률로 수입량을 제한한다.

⑧ EU 섬유 산업에의 피해가 긴박한 경우에는 사전 조사 없이 중국에 협

의를 요구할 수 있다.♣